

고지의무 위반에 보험사기 분쟁 문제와 해결방안

조우빈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의의와 법적 성격

1. 보험계약과 정보 비대칭
2. 상법상 고지의무 구조
3. 감독규정과 설명의무와의 관계

III.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효과

1. 고지의무의 범위: “중요한 사항”
2. 위반 형태: 불고지·부실고지·기망
3. 귀책 정도: 단순 과실·중과실·고의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 실무상 쟁점

IV.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구별

1. 보험범죄·보험사기의 개념
2.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3. 사기적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위반의 차이
4. 판례의 입장
5.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기로 보는 것의 위험성

V. 비교법적 고찰 독일 계약법을 중심으로

1. 수동적 고지의무 구조
2. 악의적 기망 규율(제22조)
3. 사기와 기망행위의 단계적 구별
4.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VI.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고지의무 위반

1.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구조
2. 고지의무 위반과의 접점
3. 예비행위로의 포섭 위험
4. 보험자의 남용 가능성과 계약자 보호 공백
5. 해석론·입법론상 개선 방향

VII. 고지의무 제도의 개선 방향

VIII.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보험계약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 계약이다. 보험자는 통계와 수리기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지만, 개별 계약자의 구체적 위험은 계약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면책 규정을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보험금 분쟁이 매우 빈번하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단순한 민사상의 해지 사유를 넘어 형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보험사기의 예비·착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개념과 기능, 위반의 요건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 사기적 보험계약, 형법상 사기죄를 명확히 구별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고지의무 위반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중첩될 위험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지의무 제도의 개선 방향, 특히 수동적 고지의무 도입 필요성과 감독·분쟁 실무에서의 운용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보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다. 사고 발생 후의 통지의무나 기타 계약상 부수의무는 논의의 외연에 두되, 필요할 때 한정적으로 언급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상법,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관련 법령 체계를 정리하고, 고지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며, 독일 보험계약법(VVG)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제도의 특성과 한계를 드러낸다. ①

특히 기존 학설과 논문에서 제기한 비판과 개선 주장, (1) 즉 고지의무의 능동적 구조에 대한 비판,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구별 필요성, (3) 고지의무의 수동화(응답의무화) 논의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정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의의와 법적 성격

1. 보험계약과 정보 비대칭

보험계약은 다수의 계약자가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이다. 한 사람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체 집단의 위험과 손해를 평균한 결과에 따라 산정된다. 이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별 계약자의 위험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자는 자신의 병력, 직업, 생활습관 등 개별 위험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보험자는 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약관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부과한다. 고지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위험자가 저위험자의 보험료에 편승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선량한 다수 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이 전가되며, 보험제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단순히 개별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공동체 전체의 형평과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상법상 고지의무 구조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제651조의2(서면질문사항의 중요성 추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②

요지를 정리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불고지) 부실하게 고지(부실고지) 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현행 규정은 문언상 “능동적 고지의무” 구조를 취한다. 즉, 보험자의 구체적 질문과 무관하게, 계약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려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점은 고지의무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실무에서 보험자가 사후적으로 “중요했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하게 해지·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3. 감독규정과 설명의무와의 관계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표준약관 등은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점차 강화해왔다. 상품 구조, 보장 범위, 면책사유, 이자율,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내용 등이 그 대상이다.

고지의무와 설명의무는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보험자는 계약 전에 계약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보험자가 계약 인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체계에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는 비교적 제한적인 반면,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해지·면책이라는 강력한 효과가 뒤따르고, 더 나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결합될 경우 형사적 위험까지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고지의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③

1. 한국법제연구원 「독일보험계약법 개정동향」
2. 「상법」제 651조
3.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Ⅲ.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효과

1. 고지의무의 범위: “중요한 사항”

상법은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질문표에 명시된 항목은 당연히 중요사항이 되지만, 그 밖에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사항”이 사후적으로 중요사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1) 과거의 입원 또는 수술 그리고 투약 및 검사 사실 (2) 진단명, 의심소견, 경과 관찰 소견 (3) 직업·소득 및 업무 내용의 변동 (4) 위험한취미, 음주 흡연 등,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생활습관

그러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의 과거 병력까지, 어느 정도의 경미한 소견까지 알려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 불명확성 때문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위반사항 통보를 받는 것이다. 실무에서 위 사항이 고지의무 위반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2. 위반 형태: 불고지·부실고지·기망

고지의무 위반은 통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불고지: 알리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2) 부실고지: 사실을 일부만 알리거나 축소·과장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망행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민사상 해지·면책의 관점에서는 세 유형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나, 형사상 사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와의 관련에서는 고의성과 기망의 정도가 핵심이다.

3. 귀책 정도: 단순 과실·중과실·고의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경미한 착오·기억 오류 수준이면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 즉 통상인이라면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상태. 또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의사인 고의가 요건이다.

별도의 사기 논의 없이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면 해지·면책이 문제 되고, 여기에 보험금 편취 의도, 보험사고의 우연성 해체 등이 결합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기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해지권 행사

보험자는 요건 충족 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장래를 향해 계약을 소멸시키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2) 보험금 지급 책임의 제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관련성(인과관계)이 인정되면 보험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최근 판례와 약관은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일정한 완화·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실무에서는 인과관계 논쟁이 치열하다.④

3) 제척기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보험자의 검증·심사 의무를 촉구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5. 실무상 쟁점

고지의무 위반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 사실, 중요성, 고의·중과실의 존재에 대해 보험자가 입증 부담을 진다.

2) 모집인의 지식 귀속

계약자가 모집인에게 병력을 구두로 설명했고, 모집인이 이를 문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모집인의 지식을 보험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표준약관과 설명의무

질문표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전문적일 경우, 보험자의 설명 부족이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쟁점들은 고지의무 위반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정보 제공 경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IV.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구별

1. 보험범죄·보험사기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는 보험과 관련하여 저질러지는 다양한 형사범죄 전체를 의미한다.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뿐 아니라, 문서 위조,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보험사기는 좁은 의미에서 보험사 또는 보험단체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보험사기는 사기죄 중에서도 대상이 보험계약과 보험금인 경우를 말하며, 보험범죄는 그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에 따른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초한 재산적 처분행위,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자의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 중 보험사기를 따로 규정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특별법은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상습범·고액범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독립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3. 사기적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위반의 차이

문제는 모든 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인가 하는 점이다. 사기적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이미 알고 있거나 곧 발생할 것을 거의 확실히 예측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본질적으로 부정되고, 계약 전체가 사기적인 기반 위에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 경우 보험금 편취의 구체적·직접적 의도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고지의무 위반을 사기적 보험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기 평가를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성, 보험금 취득에 대한 편취 의도, 보험사고의 우연성 침해 여부 등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4.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해 왔다. 단순히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⑤

다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비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근본적으로 해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다.

또한, 보험사가 약관에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자가 특정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곧바로 그 질환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사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고지의무 위반은 곧 사기라는 도식은 부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 행위가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5.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기로 보는 것의 위험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계약에 대하여 단순 해지를 넘어 수사기관에 통보·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면, 선의의 계약자가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내몰릴 수 있고,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지의무의 범위가 능동적·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중요했다”고 보게 되는 사실을 근거로 계약자를 보험사기 혐의자로 고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신뢰와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 모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V. 비교법적 고찰 독일 계약법을 중심으로

1. 수동적 고지의무 구조

독일 보험계약법(VVG)은 2008년 전면 개정을 통해 고지의무를 “수동적고지의무, 즉 질문에 대한 응답의무로 명확히 전환하였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진실하고 완전하게 대답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알릴 일반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보험자가 질문설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무엇을 알렸는가”에서 무엇을질문했는가”로 옮긴다.

2. 악의적 기망 규율(제22조)

독일법은 일반적인 고지의무 위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의 악의적 기망행위를 규율한다. 악의적 기망이란, 계약자가 보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민법상 사기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취소의 효과는 일정 부분 소급효를 갖지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일정 부분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악의적 기망에 대한 징벌적 의미와, 보험단체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가 결합된 결과이다.

3. 사기와 기망행위의 단계적 구별

독일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악의적 기망행위와 형법상 사기범죄를 명확히 구별한다는 점이다. 악의적 기망은 민사적으로 계약 취소 사유, 손해배상 책임의 기초이며 사기범죄는 기망, 재산상 손해 그리고 편취 의사 등 추가 요건이 발생한다.^⑥

따라서 고지의무 이행 단계에서 악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편취 의도와 손해 결과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구별은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이 모두 형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법의 최후수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4.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우리 상법은 여전히 보험계약자에게 능동적·자발적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지의 범위와 중요성 판단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구조이다. ^⑦

독일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지의무를 질문응답 중심의 수동적 구조로 전환 해야하며 보험자가 질문표를 명확·구체적으로 설계할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과 악의적 기망, 형사상 사기를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계약자에게 불편함을 해소하며 보험단체 보호와 계약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하였다.

6. 독일_보험계약법_원문본 「2024.04.11.개정」

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VI.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고지의무 위반

1.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구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시행된 이후, 보험사기를 독립된 사회문제 및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그 조사·방지·처벌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정비한 법률이다.⑧

주요 내용은

- 1) 보험사의 보고·고발·수사의뢰 권한
-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
- 3) 수사기관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 4)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5) 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와 면책 규정 등이다.

이 법은 보험사기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 예정하고 있어, 종전 형법상 사기죄보다 현저히 강화된 처벌 체계를 구축하였다.

2. 고지의무 위반과의 접점

문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의 정의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고지의무 위반도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착수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계약자가 과거 병력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병력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이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로 묶어 문제 삼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3. 예비행위로의 포섭 위험

형사법 이론상, 사기죄의 미수도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미수범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다.

이 체계와 결합할 때,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임에도, 향후 보험금 편취를 위한 준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할 위험이 있다.^⑨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 사이에는 앞서 본 것처럼 질적 차이가 있으며, 모든 비고지·부실고지를 사기 예비행위로 본다면 선의의 계약자까지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과잉 형사화가 발생한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9. KCI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4. 보험자의 남용 가능성과 계약자 보호 공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의 보고·고발·수사의뢰 권한을 명문화하면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거절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를 가진다.

반면, 보험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사기로 포장하여 지급을 지연·거절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금 지급 회피 수단”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뒤집어쓰는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법체계의 형평성과 균형을 해친다.

5. 해석론·입법론상 개선 방향

1). 해석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며,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망에 의한 보험금 편취”로 평가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2). 입법론

보험사가 보험사기 방지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근거 부족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통보·수사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3). 감독·분쟁조정

금융감독당국은 분쟁조정·제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를 엄격히 구별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건에서 형사절차 회부의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Ⅶ. 고지의무 제도의 개선 방향

현행 상법상 고지의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능동적 고지의무 구조를 수동적 응답의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에게 보험자가 묻지도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자발적 고지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보험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때 계약자는 보험자가 질문한 항목에 한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도록 하면 충분하다.

반대로 보험자가 전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까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고지의무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질문표와 청약서 문구를 중심으로 객관화·구체화될 것이며, 분쟁의 초점도 “계약자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질문했는가”라는 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고지의무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계약자에게만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위험정보를 설계·요구하는 자로서 보험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동적 고지의무 체계가 정착되면, 그 다음 과제로는 질문표의 정교화와 위험정보 설계 책임이 부각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범위를 스스로 설계하는 구조가 되는 만큼, 질문표 각 항목은 의학적·통계적 관점에서 실제로 위험추정에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비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⑩

중복되거나 모호한 질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문구는 최소화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투약 여부”와 같이 기간을 명확히 한정하고, “진단·입원·수술·투약” 등 위험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계약자가 어느 범위까지 답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질문 설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되면, 단순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고지나 부실고지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고지의무 위반 분쟁 역시 축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계약자의 고지의무 사이의 균형 역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두 의무는 본질적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서로 마주보는 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중대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항목에 관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질문표나 약관에서 사용한 핵심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자료에서 오히려 혼동을 초래한 경우라면,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면책 주장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입법론이 설득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질문표나 약관이 “검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단순한 건강검진, 정밀검사, 확진을 위한 검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거나, “자각증상”의 의미, “의사의 소견”과 “정식 진단”의 차이를 계약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제시하였다면, 이러한 모호성에서 비롯된 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및 분쟁조정 기준의 정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형사·감독 영역이 서로 겹쳐 있는 특성이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각 영역에서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인과관계, 고의·중과실의 존재, 중요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표준화된 판단 틀을 제시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 인정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 사건 중 어떤 유형에서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혐의를 문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극히 높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에 한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통보하는 방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단지 과거 병력 일부를 기억하지 못했거나 문구 해석의 혼동으로 인한 비고지에까지 일률적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붙이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험사가 반복적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의심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과도하게 지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경고·검사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금 지급 회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는 손해사정 및 조사 실무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조사 담당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

로 이를 “보험사기”의 프레임에 대입하기보다는, 해당 계약에서 고지의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었는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자의 진술 경위, 모집인과의 면담 내용, 질문표 및 청약서의 구체적 문구, 약관과 안내자료의 구성과 제공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고지와, 보험금 편취 의도가 전제된 악의적 은폐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런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만 선의의 계약자를 과도한 의심에서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보험사기 사례를 더 정확하게 선별하여 대응할 수 있다. 결국 고지의무 제도의 개선과 실무운용의 정교화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10) KCI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VIII. 결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위험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위험공동체 전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 법제는 여전히 능동적 고지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계약자가 스스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 결과 사소한 착오까지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로 비약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나아가 모호한 법문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이 결합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단순한 민사상 해지·면책 논의를 넘어 형사적 평가로 연결될 위험마저 노출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현실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더 나아가 형법상 사기·보험 사기범죄 사이에 명확한 질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이 논문으로 제기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자의 조사권·수사의뢰권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보험사기의 예비행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자리 잡을 경우, 이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분쟁은 민·형사 영역으로 동시에 비화될 수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고지의 범위를 보험자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 응답의무로 한정하고, 악의적 기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외국 입법례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결국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 의무로 재구성하는 방향이 우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는 핵심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¹¹⁾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보완입법과 감독기준 역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불명확성이 형사적 책임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오히려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주저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

결론적으로 향후 입법과 해석, 감독 과정에서는 고지의무를 사기 예방의 장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의 수동화, 질문표의 정교화, 설명의무와의 균형 있는 조정, 보험사기와 단순 고지의무 위반의 구별이라는 네 가지 과제가 바탕을 이루어야만,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익과 계약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

KCI 전한덕,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독일보험계약법 개정동향」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